



제388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특별준수사항 추가 〉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368호)

2021. 6.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허 병 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별첨 1] 현행법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별첨 2] 특별준수사항 부과 대상 성범죄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백혜련의원 등 17인
2. 제 출 일 : 2021. 2. 26.
3. 회 부 일 : 2021. 3.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그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처벌대상 범죄 유형을 확대하고,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입법적 관심과 노력이 있었음.

그러나 엄벌주의에 기반한 처벌강화 정책만으로는 급격히 변화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속성에 부합하는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과 관련된 특별준수사항 부과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정보통신기기 수검의무, 불법촬영물의 시청·제작·유포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설치 수인 및 유지의무를 특별준수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단서 및 제10호, 제11호 신설).

III. 검토의견

<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특별준수사항 추가 >

현행	개정안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①·② (생략)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u>. 다만, 제10호 및 제11호의 준수사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2호의 죄를 저지른 자에 한해 부과할 수 있다.</u>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변경·우회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지 말 것’(안 제32조제3항제11호)의 두가지 유형을 신설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위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될 수 있는 불법촬영물이나 음란물 관련 성범죄(안 제32조제3항 단서 신설)는 구체적으로 다음 표와 같음.

< 개정안에 따라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될 수 있는 성범죄 >

법률	특별준수사항 부과 가능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위 범죄의 미수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주: 위 조항의 세부 내용은 [별첨 2] 참조

○ 현재 법원은 법 제32조제3항제10호²⁾의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19조제8호³⁾에 근거하여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특별준수사항을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지도·감독)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10.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준수사항) 법 제32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생활상태,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 등으로 보아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

부과하고 있음.

즉, 불법촬영물 등과 관련한 성범죄를 범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함에 있어, “출석 면담시에 보호관찰관에게 휴대폰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을 것”, “사용하는 휴대폰에 카메라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무음 카메라 어플)을 설치하지 말고, 그 설치 여부의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 개정안은 위와 같이 재판에서 선고되는 문구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인바, 동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대상자를 모든 성범죄자가 아닌 불법촬영물 또는 음란물 등 관련 성범죄자에 한정하는 점, 불법촬영물 등 관련 성범죄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첫째, 안 제11호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프로그램 설치에 응할 의무, 프로그램을 제거·변경·우회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국가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성범죄자의 휴대전화·컴퓨터에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면, 성범죄자에게 기존 보안처분인 보호관찰·수감명령·이수명령⁴⁾ 등 이외에 ‘휴대전화·컴퓨터에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안 제11호에 따라 불법촬영물·음란물의 시청 등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호관찰 대상자의 휴대전화·컴퓨터에 설치할 경우에는 안 제10호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휴대전화·컴퓨터를 열람할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10호의 개정 실익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셋째,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음란물’(안 제10호) 또는 ‘불법촬영물·음란물 등’(안 제11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국내 법률상 ‘불법촬영물’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입법례인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② 「전기통신사업법」,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두 “불법촬영물”이 아닌 “불법촬영물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나아가 각 법률에서는 “불법촬영물등”을 구체적으로 ‘① 「성폭력

4) 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예)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 불법촬영물등 ”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다음으로 ‘음란물’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음란한 물건이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는데,⁵⁾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디지털 성범죄’의 재범요인 차단인 점⁶⁾을

5)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88

고려할 때, ‘음란물’의 소지여부를 확인하고 그 시청 등의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가 예컨대 음란한 ‘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경우에도 디지털 성범죄로 의율하여 본 특별준 수사항을 부과하려는 것인지, 나아가 합법적으로 촬영된 성적 영상물을 포함한 모든 음란물을 제한하려는 취지인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도 안 제10호가 ‘불법촬영물·음란물’이라고 규정하는 것과 달리 안 제11호는 ‘불법촬영물·음란물 등’이라고 규정하여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점, 나아가 ‘등’이라는 용어의 개념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넷째, 개정안은 ‘휴대전화 및 컴퓨터 등’(안 제10호) 또는 ‘휴대전화 및 컴퓨터’(안 제11호)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먼저 ‘휴대전화 및 컴퓨터’는 법제적 측면에서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므로 「형법」 등 기존 입법례에 따라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⁷⁾ 등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나아가 안 제10호가 ‘휴대전화 및 컴퓨터 등’이라고 규정하는 것과

6)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7)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달리 안 제11호는 ‘휴대전화 및 컴퓨터’라고 규정하여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의 개념이 불분명하므로 개정안이 정보처리장치 이외의 형태, 예컨대 문서나 도화로 불법촬영물을 소지하는 것까지도 포함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다섯째, 개정안에는 부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칙을 신설하여 시행일이나 적용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법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법무부는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으로,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의 사회적 해악 및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에 부합하는 특별준수사항이 없어 재범 방지 공백 우려가 있으므로, 디지털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차단 프로그램 설치 등 특별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2

[별첨 1] 현행법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구분	준수사항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2.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 금지 3.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4.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5.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6.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7.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8.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10.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준수사항) 법 제32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2.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성행: 성품과 행실)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3.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4.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할 것 5.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6. 흥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8.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생활상태,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 등으로 보아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

[별첨 2] 특별준수사항 부과 대상 성범죄

법률	특별준수사항 부과 가능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자·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자·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